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외통상압력

李 吭 九*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후 미국의 대외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상업주의와 중상주의를 중시하며 다자주의와 쌍무주의를 통해 통상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 냉전 종식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등장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통상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의 아·태지역과의 통상관계가 APEC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나, 미·일 통상마찰과 같이 대립과 마찰의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회원국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를 수용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쌍무적·다자적 차원에서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난 3월말에 발표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자동차, 금융,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외통

상압력을 지난 3월에 부활된 「수퍼 301조」와 對韓 자동차시장 개방요구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원인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수퍼 301조의 부활

마이클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3월 3일 “클린턴 대통령은 수퍼 301조를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 무역정책의 목표는 「대외시장개방과 무역확대」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시장개방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다자간협상을 통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서라도 시장개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수퍼 301조는 이러한 의도의 연장선상에서 부활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 수퍼 301조의 내용

수퍼 301조는 지난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 및 경쟁력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미국에 대해 차별적·제

* 産業研究院 美洲研究室 責任研究員

한적 또는 기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행하고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불공정무역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인상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수퍼 301조는 「74통상법」 301조가 특정 사례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개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데 비해 불공정무역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포괄적인 개선

보복종료

- 보복시한은 사안에 따라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으며, 이미 PFC로 지정된 국가가 다시 PFC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4년이 지나면 자동소멸
- 보복조치 내용도 언제라도 변경 가능

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퍼 301조는 지난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 바 있으며, 과거의 발동사례로는 1989년에 브라질(수입제한, 라이선싱 의무분야), 인도(투자, 보험분야), 일본(인공위성, 슈퍼컴퓨터, 목재분야)의 3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1990년에는 동일분야의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 국가가 수퍼 301조는 GATT 정신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반발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자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부활의 배경

금번에 미국이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수퍼 301조를 부활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깔려 있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미·일 포괄경제협약」이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결렬된 점이다. 미국은 일본시장의 개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89년에는 미·일간의 무역불균형 시정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과 구조협약(SII)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기대하였던 수준만큼의 일본시장 개방과 대일 무역역조가 개선되지 않자 미국은 「미·일 포괄경제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에 대해 의료기기, 통신 및 보험시장 등의 개방과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요구가 자유무

(표 1) 수퍼 301조의 내용

적용기간	1994~1995년의 2년
PFC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TR의 NTE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 PFC 지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TE보고서상에 나타난 주요 무역장벽 및 무역왜곡관행 - 해당국의 각종 국제협정 가입 및 준수사항 - 해당국의 중장기 정부조달 정책 - 미국의 관련제품·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수준 및 수출잠재력
조사개시 및 상대국과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C 지정후 21일 이내 조사개시와 동시에 상대국에 협상신청 · 상대국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속 조사 진행
조사기간 및 USTR의 대응 조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협정 및 기타 통상협정 위반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후 18개월 또는 GATT 분쟁해결절차 종료후 30일중 빠른 기간을 선택하여 보복조치 결정 · 위반사안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개시후 12개월 이내에 대응조치 결정
보복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적이고 의무적인 보복조치 발동 · 무역협정을 위반한 사안이 아닌 경우: USTR에 재량권 부여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종료후 30일 이내에 보복 여부 및 보복조치 결정
보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인상 · 수입제한 및 수량규제 · 서비스료 부과 · 무역협정상의 특혜 박탈 · 기타 적절한 조치

역원칙에 위배되는 관리무역형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여 지난 2월 양국간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약 600억달러에 달하자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흑자국, 특히 일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수퍼 301조를 부활하였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지배하는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는 수퍼 301조가 외국시장 개방에 가장 효과적인 압력수단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게 된 점이다. 미국의 통상정책관계자들은 해외시장개방을 통한 미국상품의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퍼 301조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 아래 행정명령을 동원하여 이를 부활하였으며, 그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수퍼 301조의 부활과 관련하여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은 “UR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무적 무역협상을 통한 보복조치가 자행되고 있으며, 무역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는 국제체제와 그 체제속에서 힘들게 협상해서 얻은 개선책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가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힐 것을 우려하였다.

2. 대한 자동차시장 개방압력

미국이 수퍼 301조를 부활한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시장의 개방을 통한 대일 무역수지적자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이 미국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공정무역관행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어느 국가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국별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31일에 수퍼 301조 발동의 근거가 될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1992년보다 3억 4백만달러가 늘어난 23억 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평가하며 자동차, 금융서비스, 투자장벽, 관세, 서비스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동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적재산권, 서비스시장, 수출보조분야에서 상당수준의 개선조치를 취하였다고 평

〈표 2〉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

구 분	1994년
자 동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제차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규제정책 ·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이 배기량기준이어서 미국의 대형차에 불리, 외국산 승용차의 구매시 모두 8가지에 이르는 세금 부과 및 공채매입 요구, 미국의 2.5%보다 높은 10%의 관세 · 안전 및 배기가스기준, 유통 및 광고제한 문제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조달 통제 · 신규보험 상품허가 지연 · 부동산 자산취득 규제
투 자 장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법과 규정에 의한 투자제한 · 정부 승인과 유사한 투자점검 절차와 신고절차 운용
관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어류, 육류, 과일류 등의 일부 품목에 30% 이상의 고관세 부과 · 수입주류에 차별관세 부과 · 영화수입시 국제관행과 달리 예상수익기준으로 관세 부과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발명품 등에 대한 무단복제 및 판매활동 · 해외에서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등록승인 지연 · 미국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해 수출함으로써 미국상품과의 경쟁 유발
서비스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가티브 시스템에 의한 외국인 투자 제한 · 외국어학원, CATV, 보험중개업시장의 폐쇄성 · 유통업 매장면적 및 점포수 제한

가하였으나, 자동차와 금융, 보험분야에서 불만을 표시하였다. 특히 1994년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들어 처음으로 「불공정무역관행」 대상에 한국 자동차시장을 지정한 것이다.

2) 자동차시장 개방요구 배경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1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 반면에 대미수입은 1,463대에 그쳐 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0.2%에 머무는 등 무역역조가 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UR협상의 막바지에 한·미간에 교환된 양해록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는 추후 장관급에서 발표한다'는 부분을 들어 관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 개방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자동차 3사(이하 빅 3) 회장들은 미국정부에 대해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에 노력해 달라는 서신을 보낸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두드러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회복세는 내수시장 점유율의 증가와 수출시장 그리고 지난해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가장 잘 팔린 자동차 10대 모델에 빅 3이 생산한 자동차 모델이 7개나 들어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 승용차시장의 수입침투율은 1991년까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증가했으며, 빅 3의 수출도 거대한 내수시장과 해외 현지생산 위주의 경영전략에 의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특히 미국내 중소형차시장은 일본 등 수입외국차의 독무대였으며, 빅 3은 대형차 판매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소형차 판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워왔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내의 수요가 저렴하고 연비가 높으며 안전한 중소형차에 대해 증가하자 빅 3은 중소형차종의 연구개발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빅 3은 중소형차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 생산공정,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품표준화와 자동차 1대의 조립에 필요한 부품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경쟁적으로 강구하였으며, 멕시코의 저임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생산을 확대하였다. 이 결과 1980년대 후반부터 빅 3은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중소형차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었으며, 미국 소비자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증가와 엔화강세는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회복을 가속화시켰다.

빅 3의 경쟁력 회복세와 함께 미국내 자동차전문가들은 아시아와 중남미 자동차시장이 향후 10년간 50% 이상의 판매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동 시장에서의 판매는 중소형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빅 3은 자신들이 생산한 중소형자동차의 경쟁력 확보에 힘입어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의 수출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자동차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에 열린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집중논의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만 노정되었다. 이후 미국은 「한국과의 주요 통상의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양국이 3차례의 협상을 가졌으나 한국은 구체적인 시장 개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관세, 세금, 기타 부과금 등이 수입자동차의 가격을 150%나 비싸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양국간에는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여 나가기로 했지만, 9월말까지의 협상기간중 양측이 원만한 타협을 보지 못할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를 수퍼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일정한 협상시한을 정해 우리나라와 협상을 벌이게 되며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최근 미국이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시장개방분야는 자동차·철강산업과 같이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간산업으로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거나, 금융·유통서비스·통신산업과 같이 미국의 국제경쟁력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들 산업내에서 범세계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3.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다음으로 미국이 수퍼 301조의 부활을 통해 외국시장의 개방압력을 가하게 된 동기인 미국 무역수지적자 확대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자.

1) 미국의 무역수지 현황

미국이 지난 1976년 이후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1987년에 1,52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감하여 1991년에는 667억달러로 개선되었으나, 지난해에는 1,158억달러로 적자규모가 다시 늘어났다. 미국의 GDP 대비 무역수지적자 비율도 1987년의 3.5%에서 1991년에는 1.4%로 감소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3%를 기록하였다.

(표 3) 미국의 교역구조

(단위 : 억달러, %)

구분	연도	1981	1987	1993	연평균증감률	
					'81~'87	'87~'93
차분계	수출	839.2	923.5	1,829.5	1.6	12.1
	수입	369.1	851.3	1,527.0	14.9	10.2
	수지	470.1	72.2	302.5	-36.6	27.0
자동차 제품	수출	196.6	281.3	516.9	6.2	10.7
	수입	308.9	851.7	1,024.4	18.4	3.1
	수지	-112.3	-570.4	-507.5	31.1	-2.0
소비재	수출	177.8	202.8	534.1	2.2	17.5
	수입	383.0	888.2	1,338.7	15.0	7.1
	수지	-205.2	-685.6	-804.6	22.3	2.7

한편 미국의 상품수출은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1986~1993년중 2배가 증가하여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상품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 수출은 지난 몇년간의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수입은 동기간중 1.6배가 증가하여 연평균 6.8%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수출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다시 확대된 이유는 미국경기의 빠른 회복세로 수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의 미국 무역수지적자 확대의 원인은 1980년대 전반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경기순환적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

(1)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

미국은 1987년에 무역수지적자가 사상 최대수준에 이르자 무역적자의 주범이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이듬해인 1988년에 「종합무역 및 경쟁력법」을 제정하여 대외통상압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다수의 정책입안자들이 외국의 경쟁자들이 저임과 불공정무역관행을 바탕으로 미국시장을 잠식해 온 반면 자국시장은 개방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불공정무역관행」인 것이다. 과연 미국 무역수지적자의 근본 원인이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 때문인가?

미국내 학계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의 원인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보다는 미국의 연방재정적자와 투자 및 저축간의 불균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과거 미국과의 구조협약에서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Robert T. Parry는 최근의 논문에서 '1980년대중 미국 무역수지적자의 원인이 외국의 보호무역장벽이나 불공정무역행위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주장하는 외국시장의 폐쇄성과 관련하여 일본을 포함한 외국시장이 미국기업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 완전히 제거되더라도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일정수준만 개선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 미국 무역수지적자의 원인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2) 미국의 국제경쟁력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미국 제조업의 勞動生産性(생산량/노동시간) 증가율은 1970년대 기간중 연평균 2.4%에 그쳤으나, 1980년대중에는 기업의 설비현대화 투자와 공정기술의 혁신, 근로자의 자질향상 등에 의해 연평균 3.5%로 향상되었다. 특히 1991년까지 일본, 독일에 뒤졌던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2년에는 4.3%를 기록함으로써 5%가 감소한 일본과 0.5%의

상승에 그친 독일을 상회하였으며, 지난해에는 5.5%가 증가하여 미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 제조업의 노동비용(시간당 명목임금)은 1970년대 기간중 연평균 9.1%가 상승하여 일본과 독일을 상회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근로의식이 직업안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1.4%로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생산성향상과 임금상승률의 둔화로 미국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단위생산물당 노동비용)은 달러화 기준으로 1992년에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후 지난해에는 오히려 2.4%가 감소하였으나,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1992년에 각각 16.9%와 12.2%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 1987~1992년중 미국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연평균 2.3%에 그쳤으나 일본과 독일의 증가율은 각각 4.2%와 5.6%에 달하여 미국 제조업의 상대적인 경쟁우위 확보에 기여하였다.

한편 미국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은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장기금리 수준과 증시활황에 힘입어 1990년말의 5.6%에서 지난해에는 3.5% 수준까지 하락하여 일본과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설비투자를 촉진하였다. 즉, 미국기업의 현금흐름 대비 이자지출비율은 1989년에 30% 수준에 육박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0%로 하락하였으며, 실질설비투자도 1992년에 일본과 독일이 감소한 데 비해 미국은 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진행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대폭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쟁력 회복세에 따라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3)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은 경쟁국의 불공정무역행위보다는 경쟁력 약화를 유발한 거시경제 기저상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일국의 무역수지는 저축과 투자패턴을 반영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저축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기회를 가진 국가는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무역수지적자를 유발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의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는 국내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의 국내저축률은 투자율과 거의 비슷했으며, GNP의 약 20%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며 투자율을 밀도는 저축률과 재정적자의 확대로 실질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달러화의 강세와 투자부진을 초래하였다. 투자감소에 따른 근로자 1인당 자본장비율의 감소는 생산의 제약과 기업의 수익률 저하를 가져왔고 이러한 투자재원의 감소는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또한 달러화 가치의 상승은 미국 제조상품의 수출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무역수지적자를 유발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 들어서 재정적자가 개선되고 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자 경상수지적자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980년대 전반에 확대되어 후반기에 들어 개선된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원인은 위와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4.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이와 같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 아닌 미국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1) 규제현황

미국은 수퍼 301조뿐 아니라 1979년의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 Act of 1979)을 근거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으며, 이는 시장개방을 통한 수출확대와 수입상품과의 경쟁에서 열위를 보이고 있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실시되어 왔다. 미국은 외국상품의 미국내 덤핑행위와 외국정부의 수출보조금 지급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하여 1980~1992년 기간중 무려 1,100건이 넘는 불공정무역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불공정무역관련법은 투명성과 정당성뿐 아니라 공정경쟁을 유발하기보다는 미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점에서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미국이 반덤핑법을 제정하게 된 본래의 목적은 외국기업이 약탈적 덤핑행위를 통해 국내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미국이 제소한 650여건의 덤핑사태중 약탈적 덤핑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또한 외국정부가 지급한 수출보조금이 이들 국가의 대미수출품의 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외국기업을 보조금 수혜명목으로 제제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미국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로 제소한 건수는 1982~1986년중에는 연평균 121건에 달하였으나, 1987~1992년중에는 연평균 68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1985년 이후 철강기업의 제소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1980~1992년중 미국의 반덤핑·반보조금 관련 제소건수의 약 42

%는 철강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1982~1985년과 1992년에 철강기업의 제소가 빈발하였다. 철강기업의 제소건수는 1980년대 상반기중 연평균 63건에서 하반기에는 연평균 7.4건으로 급감하였으며, 이외 산업내 기업의 제소건수도 58건에서 37건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제소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1985년 이후의 달러화 약세 때문이다. 달러화 약세는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미국내 기업이 상대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불공정무역법에 의존할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반보조금 제소행위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1980~1986년중 반보조금 제소는 불공정무역제소의 51%를 차지하였으나, 1987~1992년중에는 그 비중이 2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역시 동법에 의존하였던 철강업체의 제소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 규제의 효과와 특징

과연 미국은 이러한 불공정무역법의 운용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입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

1980~1992년중에 미국기업이 제소한 1,121건의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추적이 가능한 948건의 수입총액은 동기간중 미국 총수입액의 0.9%에 불과한 457억 200만달러에 그쳤으며, 이중 76%에 달하는 347억 2,600만달러에 대해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내려졌다. 수입규제조치의 특징으로는 관세부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관세부과율이 점차 상승한 점이다.

1980~1986년중에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을 받은 제소건수의 24%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1987~1992년중에는 동 비중이 63%로 증가하여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로 관세부과를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다른 특징은 불공정무역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수입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1980~1986년중 미국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로 제소한 수입건수의 18%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1987~1992년중에는 동 비중이 5%로 하락하였다. 또한 미국기업의 제소에 대해 피제소 외국기업이 가격인상이나 수출자율규제협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80~1992년중 미국이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여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한 평균관세는 31.3%로 1980~1986년중에는 21.6%의 평균관세가 부과된 반면 1987~1992년중에는 47.2%의 평균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은 관세부과율의 상승은 동기간중 미국의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가 강화되고 해명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피제소 기업의 증빙서류제출 미비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 미국은 “최선의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1980년대 하반기 이후 미국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억제를 통한 미국산업의 보호수단이 되고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달러화 약세로 인한 경쟁력의 강화로 미국기업의 수입과 관련된 불공정무역 제소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수퍼 301조를 부활한 목적은 바로 해외시장 개방을 통한 수출확대에 있다 하겠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하여 전술한 Robert T. Parry

는 불공정무역행위란 정부의 수출보조금과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특정산업의 보호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가 수입규제와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급 등 산업지원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과의 경쟁은 미국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신제품, 신기술과 새로운 공정기술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역동적이며 경쟁적인 세계 경제환경속에서 경쟁기반을 잠식당하고 산업에 대한 최선의 정책은 수입규제장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실업상태에 놓일 처지에 있는 근로자를 재교육시켜 보다 생산적인 일터로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보다 새롭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진 산업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을 축소할뿐만 아니라 생산과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장기변영은 민간자본 형성의 촉진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충,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기업가활동을 촉진할 수 있

는 정책을 바탕으로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장벽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보다 생산성 향상과 시장이 원자재 및 인적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내버려둘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에 논리를 둔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나 힘의 논리에 바탕을 둔 일방적인 결과지향형의 관리무역형태를 띠고 외국시장의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 대아시아 수출, 특히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 한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전략과 각종 수출지원책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외 시장개방 압력은 항공, 운수, 정보서비스, 전자통신, 보건서비스와 의료장비, 환경기술 및 장비, 금융서비스분야에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는 미국이 압력을 가하게 된 배경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능동적이며 신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압력이 가중될 분야에 대한 사전방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종 류 : 타이어산업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 및 자료, 각종 리포트 등
- 원고매수 : 제한없음.
- 마 감 : 홀수달 5일을 원칙으로 하나 수시로 접수
-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곳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무역회관 1910호)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타이어」지 담당자 앞
- 문 의 처 : TEL : (02)551-1904(이원택 과장)